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52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과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요건의 구체화	3

I.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21.

다. 회 부 일 : 2024.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요건의 구체화

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산림의 집단화 여부, 입목의 축적 등 산림 여건, 임도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의 조성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3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2. 입목의 축적, 조립한 산림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

현행	개정안
<신설>	통·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목본식물에 한정한다)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현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2024년 현재 전국 29개소(국유림 5개소, 사유림 24개소)로 면적은 57,414ha이며, 공모 선정 단지에는 10년간 75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이 지원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선도 산림경영단지 면적 및 예산 현황 】

(단위: ha, 백만원)

구분			'20	'21	'22	'23	'24
선도산림경영 단지 면적 및 개소	계	면적	53,175	55,028	57,414	57,414	57,414
		개소	23	26	29	29	29
	국유림	면적	28,371	28,371	28,371	28,371	28,371
		개소	5	5	5	5	5
	사유림	면적	24,804	26,657	29,043	29,043	29,043
		개소	18	21	24	24	24
선도산림경영 단지 투입 예산	국유림		1,850	1,850	1,850	1,817	2,317
	사유림		20,390	22,724	25,058	25,892	21,392

그러나 현행법상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정 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구체적인 선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사업의 이해관계자(산주·임업인, 산림조합 등) 및 일반 국민에게 정책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단지 선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는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③ 제1항에 따라 <u>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露地) 재배단지를 갖추는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스마트농업을 시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대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추는 것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추는 것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시설을 갖추는 것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u>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u>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법률명	관련 조문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u>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개정안은 제37조제3항제4호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개체 수 감소로 수분(受粉)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밀원식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둘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현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경제림육성단지는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림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영 여건은 목재의 수요·공급 및 증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법률 체계상 개정안에서 목재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과 밀원 식물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법률로써 단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며, 밀원식물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에도 찬성하는 입장임.

【 특화단지 조성 입법례 】

법률명	관련 조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조성)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u>뿌리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u> 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u>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법률명	관련 조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항공우주 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423